10.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O 제출일자 : 2020년 4월 9일
- O 발 의 자 : 강민구 의원, 김규학 의원, 김성태 의원, 김태원 의원, 배지숙 의원, 윤영애 의원, 이시복 의원, 이진런 의원, 황순자 의원
- O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3일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: 강민구 의원)

□ 제안이유

O 본 조례안은 열악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O "청소년지도자" 등의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O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5조)
- O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처우개선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(안 제6조)
- O 처우개선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7조)
- O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과 근무환경 개선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 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O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"청소년지도자" 등의 용어를 규정하고,
- O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O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6조는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수수준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의 계획이 포함된 처우개선 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규정하였음.

- O 안 제7조는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O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수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,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사업 등을 추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청소년 시설·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대구시의 청소년시설 현황을 보면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수련관 등 수련시설과 활동진흥센터, 쉼터, 성문화센터를 포함하여 총 44개소 시설에 42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,
- O 2020년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여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비교하여 관장급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급에서 낮은 수준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.

- O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호봉을 조정·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청소년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등 처우가 열악한 실정으로
- O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3조 제3항에서는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를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.
- O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대구시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, 근무환경 개선, 전문성 강화 교육 등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자체수익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청소년 시설의 경우, 코로나19 확산으로 몇 달 동안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특히 어려움이 더 많은 상황인데,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.	시립 기관도 상황은 어렵지만 구군 시설이 특히 재정상태가 많이 열악한 상황이며, 구·군과 협의를 해서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음.

5. 토론요지

○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.